제204회 거창군의회

<정 례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1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4 ~ 5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 ~ 55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 ~ 56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2014 ~ 57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5
2014 ~ 58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2014 ~ 59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4 ~ 60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4 ~ 61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4 ~ 62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14 ~ 63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2014 ~ 64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65
2014 ~ 6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2014 ~ 66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2014 ~ 67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1
2014 ~ 68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4

제출일자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직업의 다양화에 따른 주말부부 등이 증가하면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부모 모두 관내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통상적인 수준에서 지원되는 금액대비 일부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과다 지원으로 야기되는 위화감 및 형평성 문제 해소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완화(안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6조)

○ 부모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 ⇒ 부 또는 모로 완화

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범위 설정(안 제17조)

○ 학자금 전액 ⇒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안 제20조)

○ 창조정책과 ⇒ 창조산업과, 교육문화센터⇒ 문화센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 자 ⇒ 사람, 타 ⇒ 다른, 당해 ⇒ 해당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 조치 : 2015년 예산 20,000천원 추가 확보예정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조제3항제2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3조제8호·제9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부모 모두”를 “부 또는 모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호·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15조 중 “창조정책과장”을 “창조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해당 학교의 학자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0조제6호·제7호·제10호 중 “(창조정책과)”를 “(창조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한다.

제2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창조산업과)

제20조제9호중 “교육문화센터”를 “문화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2. ~ 3. (생 략) 4.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생 략) 6.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전입(1명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세대를 말한다. 7. “귀농세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 60세 이하의 세대주를 말한다. 8.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9.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정의)** ---------- 1. ----------**부 또는 모**--**군**----------**사람**---------- 2. ~ 3. (현행과 같음) 4. ----------**사람**---------- 5. (현행과 같음) 6. ----------**다른**---------- 7. --------**다른**---------- 8. ----------**사람으로서 다른**---------- 9. ----------**사람으로서 다른**----------
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군수는 출산장려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제5조(지원내용 및 규모)**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 가임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5조제5호의 지원대상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서 예방접종일 현재 **부모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사람으로**--- **<단서 삭제>**
③ 제5조제6호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같은 조 제7호 지원대상자 중 태아 건강보험은 임신확인일, 출생아 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결혼이민자 또는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③ ----------**부 또는 모가**---------- **<단서 삭제>**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등록 또는 가임여성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람은**----------
② 제5조제5호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를 방문하여야 한다.	② ----------**사람은** ----------
③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③ ----------
1.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람은**----------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 ②(생 략)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협약업체에서는 만기 시점에서 만기해약금을 **거창군**에 환급 조치한다.	1. ----------**군**----------

현 행	개 정 안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 시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거창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거창군수입으로 귀속된다.	2. ----------다른----------군----------군----------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부 또는 모----------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람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업무관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는 창조정책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5조(업무관장) ----------창조산업과장----------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자는 그 금액상당을 제외한다.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부 또는 모----------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사람은----------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해당 학교의 학자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사람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창조정책과**) 7. 전입고등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 내의 장학금 지원(**창조정책과**) **8.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창조정책과)** 9. 전입세대에 대한 5장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 10. 국적취득자에 대한 50만원 범위 내의 지원금 지원(**창조정책과**) 11. (생 략)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 1. ~ 5. (현행과 같음) 6. ----------(**창조산업과**) 7. ----------(**창조산업과**) **8.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원(창조산업과)** 9. ----------(**문화센터**) 10. ----------(**창조산업과**) 11. (현행과 같음)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부모 모두(또는 부모)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지원을 하였으나, 부 또는 모로 변경할 경우 연 20명 정도 증가 예상(100만원×20명=20,000천원)

○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송 재 명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5

제출일자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 규제개선 대책관련 자치법규 개선과제 반영

-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서 제출 기한 삭제(안 제4조제2항)
-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시 첨부 서류 간소화 : 6종 ⇒ 4종(안 별지 제1호서식)
-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
「상표법」제5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7.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신청)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신청은 매반기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③ 제3조제1호의 농·특산물의 사용신청·승인·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 ---------- ---------- <삭 제> ② ---------- ---------- ----------
제5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사용승인) ① ---------- ---------- ---------- ----------별지 제2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거창군 통합브랜드 사용(연장)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조직원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신청내역	품 목		용 도		
	규 격		생산기간 /생 산 량		
	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		인증사항		
신청구분		□ 사용신청 □ 연장신청			
사용목적		□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 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 공익 목적, 통합브랜드 홍보 등 □ 그 밖의 사항( )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 1부 2. 품질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공인기관 검사성적서 및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및 품질 우수성 입증서류 3. 활용 도안 1부 4.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6

제출일자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 경남도립거창대학교의 2013.1.1일자 조직개편으로「거창미래전략연구소」가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7.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7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근거 및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 명시함(안 제5조)

다. 평생교육프로그램 활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바.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예산 5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함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4. 7. 15. ~ 8. 04.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8

제출일자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우리 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안 제3조)

○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불문

나. 군의 임무(안 제5조)

○ 비문해자 조사 실시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 학력 인정제에 필요한 지원
○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다. 공동추진(안 제6조)

○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8조)

○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 1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6. 25. ~ 7. 1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의 임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구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학력 인정제에 필요한 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성인문해 교육에 필요한 제 경비

○ 관련조문 : 제7조(경비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합계
총 비용(a-b)		120	140	140	150	150	700
세출	국 비	20	20	20	20	20	100
	군 비	100	120	120	130	130	600
	소계(a)	120	140	140	150	150	700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성인문해교육은 거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지원해 오고 있으며, 향후 학력 인정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강사료 : 90,000천원

○ 워크숍 : 11,000천원(강사보수교육, 선발심사 등)

○ 행사운영 : 11,000천원(시화전, 영화보기, 백일장 등)

○ 기타운영 : 8,000천원(교재구입, 교육기자재 등)

작성자 : 창조산업과장 이 상 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59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율과 각종 이자율을 인하하여 규제완화 및 대 주민부담을 경감시킴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안 제6조)

○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반영

나.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부(사용)료율 변경 및 신설(안 제24조)

○ 주거용 : 1천분의 25 → 1천분의 20(인하)

○ 사회복지사업, 종교목적 : 1천분의 25(신설)

○ 소상공인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신설)

다. 매각대금, 변상금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반환이자 인하 및 신설(안 제35조·제81조·제81조의2)

구 분		조 문	기 존		개 정 안	
			근거	이자율	근거	이자율
분납 이자율	매각대금	제38조제4항	조례	3~6%	조례	3%
	변상금	제63조제1항	시행령	6%	조례	3%
과오납반환가산금 이자		제63조의2	시행령	6%	조례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8. ~ 8.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을 ”군수는 군의“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14조제2항 중 “법 제21조 단서”를 “법 제21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17조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을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따른「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를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제2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호 및 제33조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으로”를 “지식산업센터로”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를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를 “따라”로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제28조 제목 “(대부료의 납기)”를 “(대부료 등의 납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제22조제1호"를 "제2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9. 군이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10.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3절 및 제36조 삭제한다.

제55조제1항 중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0조제1항”을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군수는 군의----------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제14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생 략) ②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단서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일이 군수의 허가를 받은 실제 사용개시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개시일을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 ---------- ---------- ---------- ---------- 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 ---------- ----------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④ 법 제27조제4항----------관리수탁자----------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 4. (생 략)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 1. (현행과 같음) 2. 관리수탁자---------- 3. ~ 4.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관리수탁자----------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삭 제>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 략)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식산업센터로----------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대부료율) ① (생 략) ② (생 략)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2.(생 략)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대부료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 2. (현행과 같음) ③ ---------- ---------- ---------- 1.---------- 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 ---------- 1. ~ 2.(현행과 같음) 3.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따라---------- ---------- ----------벤처기업집적시설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 ---------- ---------- ---------- ---------- 1.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frac{\text{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text{해당 부지 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2. (생 략) ⑤ ~ ⑥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계약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3조제1호----------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조성원가 매각) (생 략) 1. (생 략)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 4. (생 략)	제33조(조성원가 매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지식산업센터로----------
	3.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공유재산 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는 토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주택법」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제3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 8.)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거창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1,000제곱미터 한도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최대 폭이 5미터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신 설>	9. 군이 천재 지변, 재난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0.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1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절 신탁	<삭 제>
제36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구분한다.	<삭 제>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물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72조(불용품의 폐기) ① --------- 제71조제1항----------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검수) ① (생 략)	제76조(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	②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백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8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삭 제> 2. ---------- 3. ---------- 4.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0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독서진흥발전 및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대출 이용자 확대(안 제6조)

○ 군에 주소를 둔 회원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회원

나. 도서관 사용허가 할 수 없는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삭제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시간 연장함(안 제11조)

○ (현행) 09:00부터 18:00 ⇒ (변경) 09:00부터 22:00

라.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사항 중 규제해당 내용 변경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 유지관리상 ⇒ 안전관리상

마. 입관 제한 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 삭제함(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군” 을 “경상남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유지관리상”을 “안전관리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를 “전염병환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 3. (생 략) ② (생략)	제6조(자료대출) ① ---------- ---------- ---------- 1. 경상남도----------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2. ---------- <삭 제>
제11조(사용시간)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시간) ---------- ---------- ---------- 1.---------- 2.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안전관리상---------- 2. ----------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정신이상자, 전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입관의 제한) ----전염병환자, ---------- ---------- ----------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1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폐지(2009.7.7.시행)로 시군 위임사항이었던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이「주차장법」제12조의2에 명시됨에 따라 우리 조례상 해당조문을 삭제하여 전국적 통일적 집행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규제를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제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조례 위임근거였던「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폐지(2009.7.7.시행)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변경함(안 별표 2)

○ 현행)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변경)

시설물	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2조의2 및「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 및 완화함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9조의3”을 “법 제19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5조 제목 “(공영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의 표지)”로 같은 조 제1항 중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를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로 “표시”를 “표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11조 제목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을 “(주차구획선의 표지 등)”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중 “표시”를 “표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생 략)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과 법 제19조의 3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뜻은----------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 ----------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지)** ①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표지----------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 5. (생 략) ② (생 략)	**제9조(요금의 감면)** ① ---------- ----------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3. 용적률 : 1천500퍼센트 이하	<삭 제>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주차장 바닥에는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생 략) ④ (생 략)	제19조(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표지---------- ③ ----------표지---------- 1. ----------표지----------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20㎡당 1대 ○그 밖의 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그 밖의 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4.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고 : 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비고 제4호 단서 중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본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2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기업중심의 보조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부담 감소로 투자활동 촉진

○ 보조금 수혜기업의 채권확보 규정 신설로 담보수취·관리용이 및 보증서 담보로 인한 업체의 이행의무 강화

2. 주요내용

가.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 2항, 제19조제2항제3항)

나. 보조금 수혜기업의 사업계획서상 사업 이행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안 제19조제3항)

다. 채권확보 명문화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경남도 투자유치단-3300(2014.6.23.))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함(안 제3조제3항)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0년”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각각 한다.

제19조제2항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20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2억원”을 “5억원”으로 “10년”을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과 제19조제3항 후단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이행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지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⑦ (생 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구성하되, 특성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지지원)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지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
제13조(고용보조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3조(고용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0명----------12개월----------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10명----------12개월----------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설보조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20억원----------20억원----------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20억원---------- ----------10명---------- ③ ----------50퍼센트----------5억원---------- ----------군수로부터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0조(이전보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5억원----------2퍼센트----------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3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에 관한 내용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는 등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권 양도금지, 원상회복, 변상금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제20조, 제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 제81조, 제83조와 중복

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현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변경)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이라 함은 ⇒ 이란, 기타 ⇒ 그 밖에,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3항, 제81조, 제8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6. 17. ~ 7. 07.

(나) 예고결과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설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을 ““상설시장”이란 일정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을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시시장”이라 함은”을 ““임시시장”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장 제목 “공설시장 사용”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 제목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이 조례에 의한”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라 함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뜻은---------- 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일정구역---------- 3. "정기시장"이란 일정구역---------- 4. “임시시장”이란----------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3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다만---------- ② ------에 따른----------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임시시장개설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제4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② ----에 따른----------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3장 공설시장 사용 제7조(공설시장의 사용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과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변경시(설비포함)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설시장의 상설점포 사용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3장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삭 제>
제8조(사용권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삭 제>
제9조(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1]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사용일수가 16일이상일 때에는 [별표 1] 의 기준액 전액을, 15일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③ (생 략)	제10조(사용료) ① ---------- 별표의 기준에 따른---------- ② ---------- ----------별표----------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반환 금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소 및 포기한 다음 날부터 남은기간 분에 대한 사용료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거창군 내의 주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제17조(수탁자 결격사유) ---------- ----------사람은---------- 1. 군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사람으로서----------사람 4. ---------- ----------사람 5. ---------- ----------사람 6. ----------군의회 의원
제20조(원상회복) 시장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삭 제>
제21조(변상금) 공설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임시시장 개설 지정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시	시장명	소 재 지	개설면적(㎡)		점포수 (개)	개설 지정자		
				대지	매장		법인명	대표자 (남,여)	연락처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4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도시공원법」제30조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전국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별표)

나. 점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징수 가능

○ 점용료 환불기준 :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점용료의 징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	점용료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	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같은 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5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을 한정하여 다른 재질의 제품에 대하여 진입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의 재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11조)

○ 폴리에틸렌 ⇒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

나.「폐기물관리법」개정내용 반영함(안 제8조, 제19조)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 과태료관련 삭제함(안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제38조,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별표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제6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로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제15조 제목·제1항·제2항, 제18조제4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조례 제8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생 략)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⑤ (현행과 같음) ⑥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생 략)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 ---------- ---------- ---------- --다량배출사업장---------- ----------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② ----------영----------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 ② 다량배출사업장----------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할 것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할 것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 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생 략)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 ---------- 1. ---------- ----------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삭 제> ①----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 ---------- ---------- ---------- ②(현행 제3항과 같음) ③----다량배출사업장---------- ---------- ---------- ----------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삭 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6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용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현실화(안 제7조제2항)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변경(안 제15조)

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적용 기준 완화(삭제 안 제17조)

라. 법령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정비(안 제21조제1호)

마. 토지분할 허가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바. 이행보증금의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30조의2)

사. 1·2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통합(안 제33조 및 제40조)
1·2종 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통합(안 제35조 및 제40조)

아. 생산녹지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50→60퍼센트) (안 제53조제2항)

자. 농공단지(60→70퍼센트) 및 산업단지(70→80퍼센트)건폐율 완화 (안 제54조제4호 및 제5호)

차.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용적률 완화(안 제58조제11호 ~ 제13호)

카. 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신설(안 제59조)

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61조의2)

파.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안 제31조 및 별표 6부터 10까지 및 별표 13, 별표 19)

하. 계획관리지역내 창고시설(일반창고 등) 허용

거. 그 밖에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 및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03. ~ 7. 2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을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에서”를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을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및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24조 중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을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제2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3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 제19호의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 한다

제33조 제목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4조를 삭제 한다

제35조 제목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호외의 본문 중“경상남도도시계획에 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6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7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를 “법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로 한다.

제40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43호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제49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나목 중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를 “갱생보호시설”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지방정부가”를 “경상남도나 군이”로 한다.

제51조 중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0%”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한정한다)”를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를 “퍼센트”로 한다.

제54조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제56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1”을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제60조 본문 중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제7항에 따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영 제85조제7항이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가목 중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의”를 “자문”으로 “자문”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제6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를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2조 본문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별표 3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8부터 별표 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 ---------- ----------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 략)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에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케이블텔레비전,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장, 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생 략)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국토교통부장관---------- ---------- ---------- 1. (현행과 같음)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5.<삭 제> 6.(현행과 같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 7. (생 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2. ~ 7. (현행과 같음)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개정 2007. 5. 2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지	<삭 제>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1. ~ 2. (생 략) 3.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생 략) ② (생 략)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의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어느 하나에----------

현 행	개 정 안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도로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3. (생 략)	---------- ---------- ---------- ----------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신 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어느 하나에----------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4. 기존 부지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에 따른---------- 에 따른----------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 5. (생 략)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 12. (생 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 (생 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 23. (생 략)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없는 ---------- 7. ----------없는 ---------- 8. ----------없는 ---------- 9. ----------없는 ---------- 10. ----------없는 ---------- 11. ~ 12. (현행과 같음) 13. ----------없는 ---------- 14. ~ 18. (현행과 같음) 19. ----------없는 ---------- 20.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생 략)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따라 자연경관지구---------- 1. ~ 13. (현행과 같음) 14.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생 략)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5.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7. (생 략)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5. (현행과 같음) 6.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5. (생 략)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 1. ~ 13. (현행과 같음) 14.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에 따라**---------- ---------- ---------- ---------- ---------- ---------- ---------- **<삭 제>** 2. **자연경관지구**---------- ---------- ---------- **<삭 제>** 4. **수변경관지구**---------- ---------- ---------- 5. ----------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9. (생 략)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 12. (생 략)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에 따라**---------- ----------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 12. (현행과 같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 략)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6. (생 략)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 ---------- ---------- 가. ------- 나. **갱생보호시설**---------- ---------- ----------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4. (생 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7. (생 략)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따라---------- 1. ~ 14. (현행과 같음) 15.----------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 ---------- ---------- 가. ------- 나. 갱생보호시설---------- ---------- ---------- 17.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1. (생 략)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경상남도나 군이-------- ---------- ----------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경상남도 도시계획에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1.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50% 이내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 이내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에 따라---------- ---------- 1. ~ 21. (현행과 같음) ② ---------- ---------- ---------- --60퍼센트------- 1. ----------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2. ----------제5항제1호---------- ③ ---------- ----------군계획시설 ----------퍼센트---- ----------퍼센트-------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70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3. ----------자연공원---------- 4. ---------- ----------에 따른----- ---------- ----------70퍼센트---- 5. ---------- ---------- ----에 따른---------- ----------80퍼센트----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에 따라---------- ----------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1. ~ 10. (생 략)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단서 신설> 14. ~ 21.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 (다만, 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생 략)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3.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85조제7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 ----------제58조 각 호에 따라----------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가.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나.(생 략) ② (생 략)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 ---------- ---------- ------해당---------- ---------- ---------- --------해당---------- ---------- ---------- ---------- ---해당---------- 가. ---------- ---------- ----------제58조 각 호에 따른---------- 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회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 ⑤ (생 략)	제66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에 따른---------- 2.----------에 따른---------- 자문,----------심의 또는 자문 3. ---------- ----------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생 략) ② 제6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에 따른---------- ---------- 제72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 ---------- ----------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산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삭 제>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 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지식산업센터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가목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3 제9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9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주기장은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한정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6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자동차여객터미널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는제외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8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호 가목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1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fms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시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차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 차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중 종교집회장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3호 내지 제12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료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26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건축물 시행령」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별표18 제5호 및 별표19 제11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7

제출일자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의무이행 및 권고사항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련 사항 및 건축기준 등의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 규제완화 대책관련 자치법규 의무이행 및 권고 개선과제 반영

- 군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범위 확대(안 제26조)
-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27조)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판촉활동을 허용하는 공개공지의 활용 범위 확대(안 제35조)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 등 관련 사항 마련

-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안전관리 예치 사항 마련(안 제23조)
- 건축물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실시대상 건축물 지정(안 제32조)

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축기준 등 완화사항 마련

-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위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21조)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건축물 조경기준 완화(안 제34조)
-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기준 마련(안 제42조)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건축물 사용승인 등 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마련 (안 제29조 및 제30조)
- 건축물 사용승인 등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현실화 반영(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09. ~ 7. 30.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입법예고결과 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33조, 별지 제3호·제4호서식)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김석호 (태광건축사사무소)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가 건축법에는 높이 9미터 이하까지 1.5미터 이상 이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거창군 조례안은 높이 6미터 이하까지 되어 있어 강화되므로 반대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까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토록 의견 반영	반영
여운탁 (거창건축사협회)	○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바목 그 밖의 건축물 중에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도 1미터 이상 띄어야 하는 것은 소형 다가구주택 건립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대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다가구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건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거창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기존건축물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개축 건축물. 다만, 공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기존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련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완화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2.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16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완화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와 같다.

제17조(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제4호 따른 도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 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높이제한·일조권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

제19조(용적율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20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3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및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5.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제28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과 관련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하고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거창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은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지정·통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신체적·정신적 이상 등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건축지도원으로서의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

제34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6.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용 창고
7.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정한다)

8.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1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 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면적까지로 한다.
4.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조명·조경·벤치·파고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안내표지판·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1배 이하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15배 이하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 또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 주민 다수가 그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9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만 건축 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 건축할 수 없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공동주택
3. 장례식장
4. 의료시설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4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가로구역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하는 도로 중 가장 넓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대지 밖에 있는 대지 부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공공용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8장 보칙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4조(건축상 등)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최우수, 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던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로 본다.

[별표 1]

건축허가수수료 기준(제25조 관련)

1.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가설건축물 포함)

건축허가 등 수수료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원)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000원
	그 밖의 건축물 6,000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원
	그 밖의 건축물 20,000원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	50,000원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100,000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200,000원
3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미만	400,000원
10만 제곱미터이상 30만 제곱미터미만	800,000원
30만 제곱미터이상	1,60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적용하고, 용도변경은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

가. 면적산정이 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제1호 수수료를 준용

나.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대수선 및 공작물 : 건당 1만원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제31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2시간
3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3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5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6시간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위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기술사 1명의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단위이하 절사)으로 한다.

□ **수수료 지급 기준(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50퍼센트

나.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다.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라. 동별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50퍼센트(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 시 지급한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이상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그 밖의 건축물 {단독주택 및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4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8">건 축 심 의 의 견 서 (제7조 관련)</td></tr>
<tr><td>안 건 명</td><td colspan="7"></td></tr>
<tr><td>건축위치</td><td colspan="7">(대지면적 : ㎡)</td></tr>
<tr><td>건 축 주</td><td>주 소</td><td colspan="3"></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지역·지구</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건축계획</td><td>용 도</td><td></td><td>건축면적</td><td colspan="4">㎡ (건폐율 %)</td></tr>
<tr><td>층 수</td><td></td><td>연 면 적</td><td colspan="4">㎡ (용적률 %)</td></tr>
<tr><td>구 조</td><td></td><td>주차대수</td><td></td><td>조경면적</td><td colspan="2">㎡</td></tr>
<tr><td>심의내용</td><td colspan="7">신축( ), 증축( ), 설계변경( ), 재심의( ), 기타( )</td></tr>
<tr><td colspan="8">심 의 의 견</td></tr>
<tr><td colspan="8">. . .

거창군 건축위원회 위원 (인)</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건 축 심 의 의 결 서 (제7조 관련)	
안건번호	
심의일시	
안 건 명	
신 청 인	
심 의 신청내용	- 위 치 : (대지면적 : ㎡) - 지역·지구 : - 용 도 : - 건축면적 : ㎡ (건폐율 %) - 연 면 적 : ㎡ (용적률 %) - 규 모 :
심의 결과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소위원회 수권위임, 부결)
	상기 안건을 위와 같이 의결함 . . . **거창군 건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건 축 완 화 신 청 서 (제14조 관련)

건 축 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 : -)				
대지조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용 도	주 용 도		부속용도			
건축물의 용 도	건축면적		연 면 적	㎡	지하면적	㎡
	건 폐 율		용 적 율	%	최고높이	m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완하 받고자 하는 사유			공사종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인접건물 및 대지에 미치는 영향						
기 타						

「건축법」 제5조 및 「거창군 건축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법」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인접대지 및 건축물 현황도 1부
2. 신청건물 배치도 1부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9">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 (제31조 관련)</td></tr>
<tr><td rowspan="2">업무대행
건 축 사</td><td>성 명</td><td colspan="2">(남,여)</td><td>사무소명</td><td colspan="4"></td></tr>
<tr><td>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2"></td><td>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10">업무대행
내 역</td><td rowspan="2">건축주</td><td>성명(명칭)</td><td colspan="2">생년월일
(법 인 번 호)</td><td colspan="4">주 소</td></tr>
<tr><td>(남,여)</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설계자</td><td>성 명</td><td colspan="2">사무소명</td><td colspan="4">주 소</td></tr>
<tr><td>(남,여)</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감리자</td><td>성 명</td><td colspan="2">사무소명</td><td colspan="4">주 소</td></tr>
<tr><td>(남,여)</td><td colspan="2"></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8">대상건축물 현황</td></tr>
<tr><td>위 치</td><td>대지면적</td><td>건축면적</td><td>연면적</td><td>구 조</td><td>층 수</td><td colspan="2">용 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허가번호(일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사용승인일</td><td colspan="3"></td></tr>
<tr><td>조사·검사일시</td><td colspan="6"></td></tr>
<tr><td>조사·검사 결과</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수수료 산출근거</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2">청 구 금 액</td><td colspan="7">₩ (금 원)</td></tr>
<tr><td colspan="2">계 좌 번 호</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9">위 내용과 같이 「거창군 건축조례」 제31조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 .
청 구 인 :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9">첨 부 1. 건축허가서(사용검사서) 사본 1부
2.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사본 1부</td></tr>
<tr><td>비 고</td><td colspan="8">업무대행내역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 서식의 첨부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첨부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8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안전행정부가 경제5단체, 중소기업옴부즈만 등과 협업하여 발굴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방법을 개선하고, 과오납 처리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실과 맞지 않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호·제4호, 제6조제2항, 제15조, 제42조제1항제5호)

나. 급수설비 폐전 사유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사항 삭제함(안 제25조제3항제1호·제2호)

○ 상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

다.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및 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신설함

(안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안」(환경부)

○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일괄정비권고(경상남도 법무담당관-124호 (2014.01.07.)) 유형2-과제 6, 과제 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완화 및 개선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6. 24. ~ 7. 14.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제4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46조 제목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6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4(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6 제목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을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 11.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5. ~ 11.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② (생 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상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경우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삭 제> <삭 제> 1. ---------- ----------

현 행	개 정 안
4. 지하수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되었을 경우 ④ ~ ⑤ (생 략)	2. ---------- ---------- ---------- 3.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한 자 6. ~ 1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2조(정수처분)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 -------- ---------- ---------- 원인자부담금---------- ----------
<신 설>	제46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네 차례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3(원인자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제46조에 따라 실제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6조의4(원인자부담금의 과오납처리)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46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6]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46조 관련)